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1346
------	------

제출년월일 : 2009. 6. .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검사위원의 선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결산 검사 사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제천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 (결산서의 작성)

2. 결산내용 요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예산현액 : 588,306,880,610원

구 분	금 액 (원)	비 율 (%)	비 고
수 납 액	593,115,930,820	101	
지 출 액	421,852,571,950	72	

- 이 월 : 168,129,604,370원

구 분	이 월 액 (원)	비 고
계	168,129,604,370	
명 시 이 월	80,990,624,860	
사 고 이 월	20,848,708,540	
계 속 비 이 월	6,618,891,580	
보조금사용잔액	2,448,861,390	
순세계잉여금	57,222,518,000	

3. 결산내용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제8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서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득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491,740,025,000원에

예산성립후 증감액 96,566,855,61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88,306,880,610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593,115,930,820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101%를 수납하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구 분	수 납 액 (원)	비 고
계	593,115,930,820	
지방세수입	47,848,136,400	
세외수입	136,971,155,230	
지방교부세	202,275,499,000	
재정보전금	10,536,968,000	
보조금	106,718,068,700	
공기업특별회계	65,010,702,970	
기타특별회계	23,755,400,520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88,306,880,610원에서

지출이 421,852,571,95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2%이며

그 지출액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구 분		지 출 액 (원)	비 고
합 계		421,852,571,950	
일 반 회 계	소 계	371,396,263,920	
	일반공공행정	27,921,564,690	
	공공질서및안전	9,564,275,450	
	교육	3,551,802,340	
	문화및관광	26,197,492,210	
	환경보호	37,683,611,390	
	사회복지	71,112,906,910	
	보건	6,418,040,860	
	농림해양수산	43,570,438,890	
	산업·중소기업	14,615,060,550	
	수송및교통	40,457,465,000	
	국토및지역개발	33,909,097,050	
	예비비	0	
	기타	56,394,508,580	
	소 계		50,456,308,030
공기업 특별회계		48,186,106,130	
상수도		17,714,463,230	
하수도		30,471,642,900	

구	분	지출액(원)	비고
	기타특별회계	2,270,201,900	
	주택사업	311,030,390	
	의료급여기금	221,522,470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48,600,000	
	주민소득지원사업	69,759,700	
	농공지구조성사업	177,124,230	
	문화마을	117,905,000	
	신월구획지구정리사업	40,000,000	
	도시교통사업	1,282,440,110	
	기반시설	1,820,000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잉여금은

세입예산 결산액(실수납액) 대 세출예산액(실지출액)을 공제한 차인금액은 171,263,358,870원이며, 그중 채무상환액 3,133,754,500원을 제외한 168,129,604,370원은 익년도(2009년)로 이월되었고, 내용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잉여금내역	금액(원)	비고
계		168,129,604,370	
명시이월비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외	80,990,624,860	
사고이월비	청풍호 이름찾기 지원 외	20,848,708,540	
계속비이월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외	6,618,891,580	
보조금집행잔액	고용촉진훈련실시 외	2,448,861,390	
순세계잉여금		57,222,518,000	

□ 예비비는

도로유지보수사업 외 9건에 대하여 3,266,150,000원이 결정되었으며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원)	비 고
지출결정액	3,266,150,000	
지 출 액	1,770,333,430	
이 월 액	1,372,710,000	
집 행 잔 액	123,106,570	

□ 기금현황은

12개 기금을 설치하여 10,851,551,539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원)	비 고
계	10,851,551,539	
청소년자립지원기금	669,975,825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81,807,972	
노인복지기금	986,660,083	
제천시여성발전기금	634,295,460	
재난관리기금	1,517,799,240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80,057,780	
제천시식품진흥기금	139,921,747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3,269,772,729	
문화예술진흥기금	219,220,805	
기초생활보장기금	227,949,908	
농업발전기금	2,024,089,443	
장애인복지기금	200,000,547	

□ 공유재산 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액은 387,317,012,825원이며 용도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원)	비 고
합 계		387,317,012,825	
행정 재산	계	276,565,802,015	
	공공용재산	128,622,194,755	
	공용재산	134,297,230,709	
	기업용재산	13,646,376,551	
보 존 재 산		4,402,756,015	
잡 종 재 산		106,348,454,795	

□ 물품 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액은 3,251,351,130원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품 명	수 량	금 액 (원)	비 고
구급차 외	521	3,775,137,520	

□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보고서

- 지적사항 21 건
- 일반회계 19 건
- 특별회계 2 건

※ 결산검사 의견서 내역 : 다음에 붙임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목록

□ 지적사항 (21건)

구분	연번	의견요약	소관부서	
일반회계	1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징수 및 환급 결정 관련	세정과	
	2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관련	세정과	
	3	징수 포상금 예산 증액	세정과	
일반회계	1-1	각종 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영상미디어센터)	문화관광과	
	1-2	각종 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보건복지센터)	회계과	
	2	청풍영상위원회 지원 근거 확보	문화관광과	
	3	SBS촬영장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정산 철저	문화관광과	
	4	각종 공사 설계용역 조기 발주	지역개발과	
	5	하도급업체 선정시 관내업체 기회 확대	건설방재과	
	6	담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지원방법 개선	건설방재과	
	7-1	각종 공사의 이월사업 최소화	건설방재과	
	7-2	각종 공사의 이월사업 최소화	전략기획실	
	8	각종 사업예산 관리 철저	교통과	
	<세출>	9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사업 확대	농업축산과
		10	주민자치센터 관련예산 운영 철저	자치행정과
		11	교육경비 보조사업 관리 철저	평생학습체육과
		12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사회복지과
13		마을회관 신축공사 방법 개선	사회복지과	
14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관련	환경과	
특별회계	1	신월구획지구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입 검토	지역개발과	
	2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입 검토	건축디자인과	

□ 수범사례 (3건)

구분	연번	의견요약	소관부서
수범사례	1	건설공사 법정보험료 정산 및 강사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양호	-
	2	선진 징수기법 벤치마킹	세정과
	3	번호판 영치 YELLOW CARD제 운영	세정과

2008회계 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1. 일반회계 세입분야 (지적사항 - 3건)

구분	일반회계 <세입>	연번	1	부서명	세 정 과
----	-----------	----	---	-----	-------

지적(건의)사항

○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징수 및 환급 결정과 관련하여

- ▶ 현재 세무서에서 통보되는 부과자료 또는 경정자료에 의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징수 및 환급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 통상적인 경우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후속 주민세 부과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2008년도중 제천시 화산동 거주 최○○의 경우 세무서의 부과결정이 없는 과세자료가 통보되었고 이를 기초로 주민세가 부과되었으며 납세자가 체납을 하자 납세자의 자동차를 압류하고 추후 가산금을 포함하여 징수한 사례가 있었음.
- ▶ 과세자료 통보내용을 신뢰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납세자는 위법한 재산압류 및 가산금 납부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무서 통보자료의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조치계획(결과)

○ 관련법규

- ▶ 지방세법 제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민세를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주민세도 부과 고지하도록 되어 있음.

- ▶ 세무서장은 법제179조의 4의 규정에 의해 신고 또는 납부를 받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지방세법제 130조의 12에 의거 그 세액을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다음달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세무서장이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음.

○ 업무처리 실태

- ▶ 세무서에 신고된 자료는 대전지방국세청으로 전송되어 각 해당 시·도에 통보되어 매월 각 자치단체로 전산으로 통보해 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 ▶ 우리시는 매월 15일경 국세청 통보자료를 받아 지방세 전산과 대사작업을 하여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다음달 10일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음.

○ 추후 개선사항

- ▶ 월평균 1,200여건의 자료를 통보 받아 하나하나 대사하여 수시분을 부과하고 있으며, 통보된 모든 자료를 국세청에 재확인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및 업무추진 효율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으므로,
- ▶ 국세청의 오류자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액 과세자료와 소득할 주민세 중 체납 발생자료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재확인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구분	일반회계 <세입>	연번	2	부서명	세 정 과
----	-----------	----	---	-----	-------

□ 지적(건의)사항

○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과 관련하여

- ▶ 세무서의 소득세 환급 결정 후 소득세할 주민세가 환급되기 까지 약 2개월 15일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세무서와 협조, 소득세가 환급 결정되는 경우 주민세 환급 신청(계좌번호포함)을 동시에 받아 시청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하면 주민세 환급금이 조기에 지급됨으로써 세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치계획(결과)

○ 업무처리 실태

- ▶ 세무서는 환급결정, 환급절차가 세무서에서 직접 이루어지는데 비해 주민세는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소요기간이 세무서의 통보시점에 많이 좌우되며, 환급처리 절차도 국세와 달라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음.
- ▶ 국세환급 : 환급 결정 후 계좌이체분(계좌를 신고한 경우)은 계좌에 입금되고, 현금송금분(계좌신고가 안 된 경우)은 사업장이나 주소지에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 본인이 가까운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현금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통지서 뒷면의 국세 환급금 계좌이체 요구서 겸 계좌 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환급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앞으로 발생할 환급금도 당해 계좌로 받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게 하여 추후 발생할 환급금의 계좌까지 확보하고 있음.
- ▶ 지방세환부 :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서면통보하고, 납세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환급신청을 하면 과오납금을 환부하고 있

으나, 환부세액이 소액이거나, 공부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지 및 환부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신속한 환부를 위하여, 전화를 파악하여 계좌를 확인한 후 환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인 전화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연락이 되었을 경우에도 금융사기사건 등을 우려하여 계좌번호를 파악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함.

○ 추후 개선사항

- ▶ 세무서에서 확보하고 있는 계좌번호는 앞으로 발생할 환급금도 당해 계좌로 받겠다는 납세자의 의지가 있었던 것이므로, 세무서에서 자료를 통보할 때 환급금 계좌번호도 함께 보내 줄 것을 세무서에 협조 요청하고
- ▶ 국세청과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수 없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 등 최단 시일 내에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구분	일반회계 <세입>	연번	3	부서명	세정과
----	-----------	----	---	-----	-----

□ 지적(건의)사항

○ 징수포상금 예산 증액

- ▶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의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임.

□ 조치계획(결과)

-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예산은 가상계좌 입금으로 인하여 현 예산액으로 지급이 가능함.

2. 일반회계 세출분야 (지적사항 - 16건)

구분	일반회계 <세출>	연번	1	부서명	문화관광과 / 회계과
----	-----------	----	---	-----	-------------

지적(건의)사항

○ 각종 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 ▶ 보건복지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리모델링 공사시 도면누락 및 추가공사 등으로 인한 증가금액이 15억원이상 발생하였는바, 이는 대부분 현장여건으로 인한 상황이므로 철저한 사전 검토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조치계획(결과)

【 문화관광과 】 - 영상미디어센터

- 외장 마감 디자인 변경 및 문화·집회 시설로의 건물 용도에 따른 소방시설 추가 설치 등이 설계변경의 사유였음.
- 향후 철저한 사전 검토로 설계변경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회 계 과 】 - 보건복지센터

- 건축 계획시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건(현황) 등을 고려하여 도면누락 및 추가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공사비 산출 및 예산 요구로 설계변경을 최소화
- 공사중 잦은 건의(변경)사항으로 인하여 추가 공사 및 공사비가 증가되는 바, 발주부서는 건의(변경)사항을 일괄적으로 요청하여 공사중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등 검토

구분	일반회계 <세출>	연번	2	부서명	문화관광과
----	-----------	----	---	-----	-------

지적(건의)사항

○ 청풍영상위원회 지원 근거 확보

- ▶ 청풍영상위원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바, 조례의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확보가 요망됨.

조치계획(결과)

- 청풍영상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추진토록 하겠음.

구분	일반회계 <세출>	연번	3	부서명	문화관광과
----	-----------	----	---	-----	-------

지적(건의)사항

○ SBS촬영장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정산 철저

- ▶ SBS 촬영장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 초록뱀 미디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통한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이 있는바 향후 공사의 시행과 정산에 있어 명확히 하시기 바라며, 공사의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부분에 대한 지출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조치계획(결과)

- 향후 보조금 지급시 지도 감독 및 정산을 철저히 하여 사업목적 범위내 지출토록 하겠음.

구분	일반회계 <세출>	연번	4	부서명	지역개발과
----	-----------	----	---	-----	-------

□ 지적(건의)사항

○ 각종 공사 설계용역 조기 발주

- ▶ 대부분의 공사 추진시 2~3월중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3~5월중 공사를 추진함으로 인해 공사발주가 늦어지고 영농시기와 겹치는 기간에는 공사를 추진하지 못해 연말까지 공사가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경우 많음. 향후에는 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3월에는 착공하여 소규모 공사는 영농기간 이전에 마무리 하고 가급적 연내에 집행 완료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 조치계획(결과)

- 이월예산은 전년도에 용역을 완료하고 3월 이전에 착공이 가능하나, 본예산은 연초에 예산집행하고, 용역기간이 2~3개월 소요되어 3월내 착공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 조기발주에 최대한 노력하겠음.

구분	일반회계 <세출>	연번	5	부서명	건설방재과
----	-----------	----	---	-----	-------

□ 지적(건의)사항

○ 하도급업체 선정시 관내업체 기회 확대

- ▶ 공사발주 후 하도급업체 선정시 관련부서에서 관내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좀 더 많은 부분이 관내업체에 하도급 될 수 있도록 기회 확대 요망.

□ 조치계획(결과)

○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및 권고 등 적극 이행

- ▶ 미래경영본부장을 비롯 건설방재과장, 팀장, 담당자가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권장 및 권고
- ▶ 계약시 계약담당자 및 계약팀장, 회계과장 재차 권고
- ▶ 지역자재 및 장비 사용 권고

구분	일반회계 <세출>	원번	6	부서명	건설방재과
----	-----------	----	---	-----	-------

□ 지적(건의)사항

○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지원방법 개선

- ▶ 2008년도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는 13억원정도로, 집행은 시의 배분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한 후 해당 읍면동에서 사업을 선정 집행하고 있어, 형평성 및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 앞으로는 일부 사업비만 읍면동에 배정하여 추진하고 가급적 시 예산으로 편성하여 대단위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기 바람.

□ 조치계획(결과)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배분방식은 수몰면적, 사업구역인구, 사업구역면적, 협의회분으로 구분되며 2008년도 10월에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함.
- 개선방안으로 2009년도 배분방식은 협의회분만 본청 예산에

편성하여 주요 현안사업으로 금성면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며,

- 2010년 배분방식은 해당 읍면동에 소규모사업으로 수몰지역에 50백만원, 비수몰지역에 30백만원정도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본청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임

구분	일반회계 <세출>	연회	7	부서명	건설방재과/전략기획실
----	-----------	----	---	-----	-------------

□ 지적(건의)사항

○ 각종 공사의 이월사업 최소화

- ▶ 사업의 진행도와 예산의 집행율이 현저히 떨어져 이월 사업비가 과도하게 많이 나타나는바, 예산 성립의 체계를 변화 시켜야 한다고 봄.
- ▶ 이월의 주요 사항으로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설계예산과 보상예산, 시설예산을 구분지어 단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과도한 예산 확보와 이월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봄.

< 최근 3년간 이월사업 현황 >

(단위 : 원)

연도별	예산현액	이 월 액 현 황			현액대비 이월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2006년	362,412,107,280	48,997,191,710	42,644,153,170	6,353,038,540	13.5%
2007년	419,468,412,000	74,748,206,650	62,205,976,600	12,542,230,050	17.8%
2008년	495,656,473,640	93,599,551,290	75,261,911,700	18,337,639,590	18.8%

□ 조치계획(결과)

【 건설방재과 】

- 조기공사 발주 및 시행
 - ▶ 공사의 조기 착공 및 준공으로 이월 예방
- 예산의 탄력적 운영
 - ▶ 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 착공 지연시 예산 삭감 및 타 사업 시행으로 이월 방지
- 명년도 예산 편성시 부터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설계비 및 보상비와 시설공사비를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협조 시행

【 전략기획실 】

- 2009이월예견사업비 감액 ⇒ 재투자
 - ▶ 조기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이월 예상 사업비를 삭감하여 시급한 투자사업비로 조기 재투자함으로 이월액도 줄이고, 재원의 활용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지침으로 이미 시달하였음.
- 향후 신규사업의 집행시기 조정 ⇒ 공정에 따른 예산편성
 - ▶ 본예산 편성후 설계와 보상, 사전절차등을 이행한 후 본 공사를 발주할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신규사업의 경우 설계와 보상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본공사는 다음연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지침으로 이미 시달하였음

※ 제2추경예산 편성계획 - 전략기획실-5862(2009. 5.26)호 참고

구분	일반회계 <세출>	연번	8	부서명	교 통 과
----	-----------	----	---	-----	-------

□ 지적(건의)사항

○ 각종 사업예산 관리 철저

- ▶ 청전주차타워 설치 공사를 위한 예산 26억원중 일반회계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3억원이 지출원인행위 및 이월을 하지 않아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음으로 인해 다시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 바, 서류상이라고는 하나 예산의 집행부분을 잘 살피어 꼭 필요한 예산의 집행 시기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 ▶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 각 부서에서는 특별 관리 하고 예산부서와 경리부서에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봄.

□ 조치계획(결과)

- 업무연찬을 통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처리방법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으며, 회계전출·입 같은 내부거래의 경우 예산확보 후 즉시 시행하여 실기(失期)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의 경우 지출원인 행위를 실시하여 특별회계 세입처리 하는 것을 후임자에게 철저한 업무인수인계를 통하여 차후에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예산 이월시에는 예산부서 및 경리 부서와 업무협조를 통하여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일반회계 <세출>	연번	9	부서명	농업축산과
----	-----------	----	---	-----	-------

□ 지적(건의)사항

○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사업 확대

- ▶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에 있어 도비확보에 따른 시비의 잔액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삭감치 않고 잔액을 발생시킨 것은 예산의 사장이라 할 수 있으며,
- ▶ 소규모 유치원과 보육시설에는 지원하지 않음으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바, 조례의 개정을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사업 집행현황 >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잔 액	비 고
계	679,594,000	430,746,780	248,847,220	
보조사업	196,594,000	196,594,000	0	2회추경 반영
자체사업	483,000,000	234,152,780	248,847,220	

□ 조치계획(결과)

-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수립시 사전 도비 내시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학교에 필요한 공급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최대한 예산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 하여 향후 보육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3항 신설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구분	일반회계 <세출>	연번	10	부서명	자치행정과
----	-----------	----	----	-----	-------

□ 지적(건의)사항

○ 주민자치센터 관련예산 운영 철저

- ▶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은 자치센터별 특성 및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편성하여야 하나 2008년 예산 편성액 594,225천원중 집행액은 381,073천원으로 집행을 65%에 그침.
- ▶ 특히 덕산면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율이 현저히 떨어져 참석수당 지출 비율이 25%밖에 되지 않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 ▶ 주민자치센터 예산편성시 지역여건과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조치계획(결과)

- 2009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예산액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으며,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토록하고 회의 미참석자에 대한 참여 독려 및 장기간 미참석자에 대하여는 위원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급시에는 참석자 명부를 확인하여 지급하는 등 주민자치센터관련 예산 집행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분	일반회계 <세출>	연번	11	부서명	평생학습체육과
----	-----------	----	----	-----	---------

□ 지적(건의)사항

○ 교육경비 보조사업 관리 철저

- ▶ 교육경비 보조 사업에 있어 일부 인문계 고교에 사업비가 편중되어 지출되는바 사업비 배분 및 사업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일부 계획과 다르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

□ 조치계획(결과)

-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회)에 의하여 매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업선정을 하고 있으며,
- 향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시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선정된 각 기관별 사업의 적정 집행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일반회계 <세출>	연번	12	부서명	사회복지과
----	-----------	----	----	-----	-------

□ 지적(건의)사항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 ▶ 종합사회복지관 산하 자활센터가 관리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 제천시에 보고한 사업 수입 금액과 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대사 확인한 바,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파악됨.

(단위 : 원)

업 체 명	사업수입금액	부가세 신고과표	차 액
외 식	60,130,200	19,217,850	40,912,350
방 앓 간	21,041,100	12,798,100	8,243,000
한방오색두부	12,342,500	6,249,500	6,093,000
계	93,513,800	38,265,450	55,248,350

- ▶ 한방오색두부의 경우 사업수입이 2008년 3월부터 발생하였는데도 2008년 8월에 사업자등록 신청함.
- ▶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야 할 것임.
- ▶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가 사업영위와 관련한 세무,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조치계획(결과)

- 향후 자활공동체 사업단 구성시 사업자등록토록 할 예정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신고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구분	일반회계 <세출>	연번	13	부서명	사회복지과
----	-----------	----	----	-----	-------

□ 지적(건의)사항

- 마을회관 신축공사 방법 개선
 - ▶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있어 마을 직영 처리시 절세의 효과는 있으나 정산의 투명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바, 향후 추진에 있어서 가급적 마을회 직영처리를 지양하기 바람.

□ 조치계획(결과)

-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정상적인 사업자가 시공 원칙 마을 대표에게 통보로 직영처리를 지양토록 하겠으며,
-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 진행과정 착공신고, 공정, 사용승인일(건축물 관리대장)별 보조금을 지급하겠으며(금년 조기집행 제외)
- 마을회관 신축관련 공사추진별 사진대지를 정확히 촬영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읍면동장에게 통보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2년) 징구로 부실공사 방지

구분	일반회계 <세출>	연번	14	부서명	환경과
----	-----------	----	----	-----	-----

□ 지적(건의)사항

○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관련 (환경과)

- ▶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있어 자가 설계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일부 사업 부실이 우려되며 사업 효과를 반감시키는 면이 있는바 표준 설계안을 마련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하고 시공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시행하여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 ▶ 신청자에 비해 사업비가 부족하여 과당 경쟁이 되고 있어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 조치계획(결과)

○ 효율적인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 ▶ 2009년 사업추진 시는 환경부 표준설계안으로 전문업체에서

시공 및 시행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민원발생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 ▶ 농가와 시공업체간 5년간 A/S 계약을 체결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 신청농가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0년도 사업 국도비 신청시에 2009년 52,000천원보다 2배 높은 100,000천원을 신청하였으며, 현행 농가 자부담비율 40%를 30%로 낮출 수 있도록 시비 부담을 35%에서 10% 늘려 45%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특별회계 분야 (지적사항 - 2건)

구분	특별회계	연번	1	부서명	지역개발과
----	------	----	---	-----	-------

지적(건의)사항

○ 신월구획지구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입 검토

- ▶ 신월구획지구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2008년도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2%정도에 불과함.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다면 일반회계 편입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람.

조치계획(결과)

- 폐지조례안 6월 정기의회에 상정 예정.
(폐지 절차 진행중)

구분	특별회계	연번	2	부서명	건축디자인과
----	------	----	---	-----	--------

□ 지적(건의)사항

○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입 검토

- ▶ 주택법 제73조 및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중에 있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2008년도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97%에 이르는 등 집행율이 저조한 바, 법이나 조례에 문제가 없다면 일반회계 편입에 대하여 재검토 하시기 바람.

□ 조치계획(결과)

- 현재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설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조항을 신설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자금을 능동적으로 사용, 관리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
-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자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집행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시행하여 특별회계의 전체적인 활용성을 증대하고자 함.